

보도 일시	2022.4.29.(금) 조간 2022.4.28.(목) 11:00	배포 일시	2022. 4. 28.(목) 06:00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44-200-5530)
		담당자	사무관 류충현 (044-200-5540)

5월부터는 삼치, 감성돔, 주꾸미 잡으면 안돼요

- 5.1.(일)부터 삼치·감성돔 금어기, 5.11.(수)부터 주꾸미 금어기 시작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부터 삼치와 감성돔, 주꾸미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삼치 (<i>Scomberomorus niphonius</i>)	감성돔 (<i>Acanthopagrus schlegelii</i>)	주꾸미 (<i>Amphioctopus fangsiao</i>)

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가 특정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는 기간인 금어기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주꾸미, 꽃게 등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해 금어기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5월에는 주꾸미와 삼치, 감성돔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삼치와 감성돔은 5월 1일(일)부터 5월 31일(화)까지 한 달 간 잡을 수 없고, 주꾸미는 5월 11일(수)부터 8월 31일(수)까지 약 4개월 간 포획과 채취가 금지된다. 주로 5월에 알을 낳는 삼치와 감성돔의 특성과, 4월에서 6월 사이에 태어나 7월에서 10월까지 성장기를 보내는 주꾸미의 특성을 고려해서 5월부터를 금어기로 정한 것이다.

그 외에도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항 등 7개 어종의 금어기도 5월부터 시작된다.

품 종	포획금지기간	품 종	포획금지기간
전어	5.1~7.15(단, 강원, 경북 제외)	감태	5.1~7.31(제주 연중)
말쥐치	5.1~7.31 (단, 정치망 연안어업구획어업 6.1~7.31)	곰피	5.1~7.31
삼치	5.1~5.31	대항	5.1~7.31
감성돔	5.1~5.31	주꾸미	5.11~8.31
대하	5.1~6.30	참문어	5.16~6.30 (단, 경남·전남 5.24~7.8, 제주 8.1~9.15)

금어기를 위반하여 5월에 삼치, 감성돔 등 총 10종의 물고기를 잡을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5월 한 달 간 금어기 위반 등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정기원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주꾸미와 삼치, 감성돔이 순조롭게 산란하고 성장하여 모두에게 유용한 수산자원이 될 수 있도록 어업인과 국민 모든 분이 금어기를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참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금어기·금지체장



시행 : 2021.1.1

월	1월	3월	4월	5월
품 종	명태	대구	가리비	삼오징어
포획금지기간	1.1~12.31	1.16~2.15	3.1~6.30	4.1~5.31(단, 근해채낚기, 연안복합, 정치망 4.1~4.30)
포획금지체장	35cm	15cm	7cm(강원)	21cm

월								6월				
품종	대하	전어	대합	갈태	곰피	말쥐치	주꾸미	낙지	참홍어	꽃게	소라	필담새우
포획금지기간	5.1~6.30	5.1~7.15(단, 강원, 경북 제외)	5.1~7.31	5.1~7.31(제주 연중)	5.1~7.31	5.1~7.31	5.11~8.31	6.1~6.30 (지자체 별도 고시 가능)	6.1~7.15	6.21~8.20(단, 연평 등 서해5도서 7.1~8.31)	6.1~8.31(전남, 제주), 7.1~9.30(제주 추자면) 6.1~9.30(울릉)	6.1~8.31
포획금지체장						18cm			42cm	6.4cm	5cm(제주 7cm)	10cm

월	7월											
품종	새조개	대게	갈치	참조개	해삼	백합	개서대	달새우	오분자기	키조개	붉은대게	육돔
포획금지기간	6.16~9.30 (단,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 6.1~9.30)	6.1~11.30	7.1~7.31 (근해채낚기, 연안복합 제외)	7.1~7.31(단, 유자망 4.22~8.10)	7.1~7.31	7.1~8.20	7.1~8.31	7.1~8.31	7.1~8.31	7.1~8.31	7.10~8.25 (단, 강원연안지방 6.1~7.10)	7.21~8.20
포획금지체장		9cm	18cm(항문장)	15cm		5cm	26cm	5cm	4cm(제주)	18cm(부산, 울산, 강원, 경북, 경남)		

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품종	돌부기	전복류	넙치	도박류	연어	돔	취노래미	개다시마	우뚝가시리	문치가자미			
포획금지기간	8.1~9.30	9.1~10.31(제주 10.1~12.31)	9.1~11.30(제주) (단, 제주도 고시로 5.1~11.30 중 3개월 이상 지정 가능)	10.1~익년 4.30	10.1~11.30	10.1~익년 1.31	11.1~12.31	11.1~익년 1.31	11.1~익년 4.30	12.1~익년 1.31			
포획금지체장		7cm(제주 10cm)					20cm			20cm (단, 3년간 17cm)			

구 분	제 종	금 지 체 장																			
		기름가자미	기수재첩	갯장어	넙치	농어	도루묵	대문어	돌돔	미가리	민어	방어	볼락	봉장어	용가자미	조피볼락	참가자미	참돔	청어	황돔	황복
포획금지체장		20cm (단, 3년간 17cm)	1.5cm	40cm	35cm	30cm	11cm	600g	24cm	40cm	33cm	30cm	15cm	35cm	20cm (단, 3년간 17cm)	23cm	20cm(단, 3년간 17cm)	24cm	20cm	15cm	20cm

* 빨간색 : 2021.1.1부터 변경되는 어종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도	어 류	갑각류	오징어류	패 류	암컷 포획금지 4종	품종	포획금지기준	품종	포획금지기준
						꽃게	복부 외포란 암컷	대게	암 컷
						민꽃게	붉은대게		

(수산자원관리법 제6조 제3항)

- 문치가자미, 참가자미, 용가자미, 기름가자미의 경우 '21.1'~'23.12.31'까지는 17cm 이하 적용, '24.1'부터는 20cm 이하 적용
- 별도 금지 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참조
- 개정 어종의 경우, '21.1'부터 시행(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20.9.22 공포 및 11.10 공포)